

여용빈의 『유술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옥의 실태와 채옥의 원인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고문헌관리학 전공
ckmok@aks.ac.kr

- I. 머리말
- II. 자료 소개와 사건 전말
- III. 수옥의 실태
- IV. 채옥의 원인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소송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조선시대 소송의 절차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중 하나가 체옥(滯獄) 혹은 체송(滯訟)이다. 체옥이란 체수(滯囚)라고도 칭했으며 피의자를 감옥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고, 체송은 소송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다. 감옥에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수옥자(囚獄者)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수옥 기간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옥자 측에서 부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세탁, 난방 등도 수옥자 편에서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가족 1명이 장기간 미결수로서 감옥에 갇힐 경우, 가족 중의 한두 명은 옥바라지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이 차츰 어렵게 되어 결국 파산하거나 가족이 붕괴되는 사례조차 있었다.

필자는 이전에 영조 초년에 일어났던 무신난(戊申亂)을 살펴보다가 전라도 부안현 출신의 김수종(金守宗)이 이에 연루되어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던 1728년(영조 4) 7월부터 이 사건이 마무리되던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양 전주 감영의 감옥에 갇혀 지낸 사실을 알고서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지 궁금했다.¹⁾ 또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죄수를 가급적 감옥에 가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²⁾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의문이었다. 아울러 수감 기간 동안에 식사와 세탁 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고 싶었다.

또 산송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박효랑(朴孝娘) 사건을 살펴보다가 박명빈(朴明彬)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일종의 미결수로서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의금부 감옥에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으며 어떻게 인고의 세월을 감당했는지 궁금했다.³⁾ 또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든 비용을 어떻게

1)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신아출판사, 2001), 237쪽.

2) 『經國大典』, 「刑典」, 〈恤囚〉. “隆寒·極熱時(自十一月初一日 至正月晦日, 自五月初一日 至七月晦日) 事干綱常·贓盜男人杖六十以上, 女人杖一百以上外, 其餘杖一百以下收贖, 自願受杖者聽.”

3) 전경목, 「박효랑 사건의 전말과 소송상의 문제점」, 『법사학연구』 31(2005), 152-153쪽.

마련했는지 등도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조선시대 과거시험 거부 기록으로 알려진 『유술록(酉戌錄)』을 읽어보았는데⁴⁾ 이 책은 과거시험 거부 기록이면서 동시에 장기 체수의 기록이었다. 『유술록』의 저자인 여용빈은 과거시험을 거부한 주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1717년 8월 11일에 옥에 갇힌 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무려 9개월 동안 '수옥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간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수옥의 실태와 체옥의 원인 등을 살펴보는 데 매우 좋은 자료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유술록』과 여기에 기록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거부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수옥의 실태와 체옥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만 조선시대는 신분사회고, 또 그 신분제에 따라 상이한 법이 적용되는 차등사회였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의 신분과 여러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이 달랐다. 더군다나 『유술록』에 기록된 과거시험 거부사건은 피의자가 모두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의 범죄자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일기의 주인공인 여용빈 등은 감옥인 쇠장방(鎖匠房)과 주인가(主人家)를 전전하고 수옥 기간에 드는 비용도 자신의 집에서 대지 않고 향교나 서원 및 유림들의 부조로 충당했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의 일반 수옥자와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유술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옥의 모습은 조선 후기 수옥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조선 후기 수옥의 일반적인 모습이나 체옥의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옥이나 체옥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힌 피감자가 식사, 세탁, 난방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하루 일과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며 나아가 소송이 어느 정도 지연되어야 체송이라고 하는지, 미결수로 갇힌 지 얼마가 지나야 체옥이라고 하는지, 조선 후기 체옥의 실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4) 권인호 교열해제, 박찬호 원문정리, 임옥균 번역, 『유술록』(학고방, 2012).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한 한 사례 연구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감이나 체옥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사례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수옥과 체옥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발굴되고 연구되어야 비로소 조선 후기 수옥의 전반적인 모습이나 체옥자의 일상적인 생활 등이 조망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I. 자료 소개와 사건 전말

『유술록』은 경상도 상주 출신의 여용빈(呂用賓)이 저술한 것으로⁵⁾ 1717년 정유년(丁酉年)과 그 이듬해인 1718년 무술년(戊戌年)의 간지에서 한 자씩을 따와 제목으로 삼았다.⁶⁾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1717년과 1718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과거시험 거부’였다. 이로 말미암아 여용빈과 동료들은 체포된 후 감옥에 갇혀 9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저자는 이를 일종의 비망록 형태로 작성했다.⁷⁾ 이 책은 현재 윤한탁이 소장하고 있으며 분량은 겉표지와 속표지를 포함해 95쪽이다. 책 크기는 가로 24.6cm, 세로 18.8cm이며 매 쪽마다 16행, 한 행마다 20-25자가 쓰여 있다.⁸⁾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같은 이름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유일본으로 추정된다.⁹⁾

이 『유술록』을 최근에 권인호, 박찬호, 임옥균이 각기 해제, 원문정리, 번역을 해서 간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자가 여용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¹⁰⁾ 권인호가 상세한 해제를 덧붙여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5) 권인호의 「유술록 해제」에는 여용빈을 성주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으나(11쪽, 16쪽) 이는 착오인 듯하다. 그는 상주 출신이었다.

6) 임옥균, 「윤긴이의 말」, 앞의 책, 5쪽 참조.

7) 1717년 12월 9일, 위의 책, 135쪽. “以前親舊之來問者甚衆 而忙撓未記 甚可欠事 既往雖不可追 方來猶可記 故自今爲始 以備他日之省記焉.”

8) 앞의 「윤긴이의 말」, 위의 책, 5쪽.

9) 위의 책, 7쪽 참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박찬호가 반초서(半草書)로 쓰인 원문을 일일이 활자로 옮겨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임옥균이 이를 현대어로 쉽게 번역해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술록』의 원문을 정리하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도 있었다. 반초서의 원문을 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두어 곳 잘못 옮긴 부분이 있으나¹¹⁾ 이것은 매우 사소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오류는 번역자가 역사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오역한 경우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감시(監試)’는 생원진사시를 지칭하는데 이를 ‘각도의 감영에서 치른 시험’으로 소개하거나¹²⁾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것(科行)을 의미하는 ‘관광(觀光)’을 ‘두고 보려는’ 혹은 ‘두고 보기’ 또는 ‘두고 보자’로 번역하거나 과거 응시자인 ‘관광자(觀光者)’를 ‘두고 보려는 자’로 오역했다.¹³⁾ 또 향리들의 집무소였던 ‘성청(星廳)’을 ‘성주(星州)의 향청’으로 해석하고¹⁴⁾ 향리와 감영의 영리(營吏)끼리 주고받는 통지문인 ‘사통(私通)’을 ‘사적 통지’로 잘못 풀이했으며¹⁵⁾ 다른 고을 혹은 다른 고을 사람을 가리키는 ‘타관(他官)’ 또는 ‘타관인(他官人)’에서 ‘타(他)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관청’ 또는 ‘관인’으로 오역했다.¹⁶⁾ 이 외에도 당색이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한 ‘일변인(一邊人)’을 ‘어떤 사람’으로 번역하거나¹⁷⁾ 향교나 서원 등지에서 ‘머물며 수학하는 유생’을 가리키는 ‘거접인(居接人)’을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석하고¹⁸⁾ 담배를 가리키는 ‘초(草)’를 그냥 ‘풀’로 번역한 경우는 대표적인 오역이라 할 수 있다.¹⁹⁾

그렇지만 이러한 사소한 오류나 오역에도 불구하고 『유술록』을 통해 조선 후기 과거시험 거부の内容과 당시 수옥의 실태나 체옥의 원인을

10) 앞의 「옮긴이의 말」, 위의 책, 6쪽.

11) 예컨대 ‘儒錢收聚之議’를 ‘儒錢收聚之疏’로(51쪽), ‘亦三億汰遞事也’를 ‘亦三億汰逮事也’로(135쪽), ‘四館所良中’을 ‘四館所郎中’으로(218쪽) 옮긴 것이 그것이다.

12) 앞의 책, 37쪽 주15 참조.

13) 위의 책, 51쪽, 61쪽, 91쪽.

14) 위의 책, 71쪽.

15) 위의 책, 66쪽.

16) 위의 책, 84쪽, 105쪽.

17) 위의 책, 47-48쪽.

18) 위의 책, 132쪽.

19) 위의 책, 154쪽.

과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번역본을 이용하되 오역이나 표현이 어색한 곳은 필자가 임의로 수정해 소개했다.

이제 『유술록』에 기록된 ‘과거시험 거부사건’의 전말에 대해 살펴보자. 1717년(숙종 43)의 식년 생원진사시 초시는 이해 8월 9일 상주도호부(尙州都護府)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²⁰⁾ 그런데 숙종이 7월 19일에 서인의 영수 좌의정 이이명(李爾命, 1658-1722)과 독대해 대리청정을 명령했다.²¹⁾ 정치적으로 대부분 남인(南人) 성향이었던 경상도 유생들은 이 조처가 그들이 지지하는 동궁의 지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대리청정의 소문을 듣고 크게 놀란 여용빈 등은 며칠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주에서 실시된 정시(庭試)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자들과 조보(朝報)를 통해 서울의 소식을 자세히 파악했다.²²⁾ 또 홍문관에서 대리청정의 명령을 거두어주기를 청하는 차자(劄子)를 직접 구해 그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기도 했다.²³⁾

생원진사시 초시를 치르기 위해 상주에 모여들었으나 뜻밖에 대리청정의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영남의 유생들이 8월 4일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들 객사(客舍) 문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여서 논의한 끝에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 소청(疏廳)을 설치해 상소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 곳에 알릴 제통공사원(製通公事員)을 선출했다.²⁴⁾ 8월 5일, 남문 안에 도회(道會)를 설치하고 이에 찬동하는 사람을 모으니 무려 수천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동궁을 보호하고 아첨하는 신하의 목 베기를 청하지는 내용으로 통문을 작성해 좌도(左道) 시소(試所)가 있는 안동으로 보냈다.²⁵⁾ 이어서 소청을 설치하여 장의(掌議)와 공사원(公事員)을 선정했으며 오후에는 소두(疏頭)와 유전수취유사(儒錢收聚有司) 등을 선발했는데 여용빈은 마침 유전수취유사로 선발되었다.²⁶⁾ 물론 후에는 임원이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음 임명되었

20) 위의 책, 37쪽. “丁酉式年監試 設行於本年八月九日 而試所 [...] 移定于尙州都護府.”

21) 『숙종실록』 43년(1717) 7월 19일자 참조.

22) 1717년 8월 4일, 『유술록』 40쪽. “午後因歸自淸州庭試來者 及斷爛朝紙 始詳京耗.”

23) 1717년 8월 4일, 위의 책, 40쪽. “日暮得見玉堂劄子.”

24) 1717년 8월 4일, 위의 책, 43쪽. “數三同志 不謀而同 相率而會于客舍門外 蓋欲爲道會 陳疏之舉也 鄉中老少 道內諸友 無一人異辭者 可見人心之所同也 以明日決意 停科設疏 出製通公事員而罷 夜已二鼓許矣.”

25) 1717년 8월 5일, 위의 책, 45쪽. “設道會於南門之內 會員無慮累千 而憤不顧身 效死不悔 秉筆所在 誠若是也 以保護東宮 請斬佞臣之意 發通於左道試(글자의 일부가 보여 추정하였다)□…□.”

표1-소청 임원 명단

임원	성명	출신지
소두	황종준(黃鐘準)	상주(尙州)
장의	이세배(李世培)	성주(星州)
	김창흠(金昌欽)	상주
공사원	배윤수(裴胤脩)	성주
	강석필(姜碩弼)	상주
유전수취유사	여용빈(呂用賓)	상주
	조명노(趙命老)	미상

던 임원 명단을 소개하면 표1과 같다.²⁷⁾

소두 황종준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은 과거시험 거부와 상소문 작성을 위해 유생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소청 준비를 위해 분주히 뛰었다. 8월 6일에 여용빈 등은 유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방문(榜文)을 지어 동서남북의 4성문(城門)에 걸었다.²⁸⁾ 그럼에도 과거 응시를 위해 등록(錄名)하는 유생이 있자 그 명단을 성문 위에 내걸어 유생들이 등록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²⁹⁾ 이튿날에는 유생이 손쉽게 연명할 수 있도록 내소청을 비장소(裨將所)로, 외소청을 연당문(蓮堂門)으로 옮기자 무려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³⁰⁾

이처럼 유생들이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고 오히려 상소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녹명관(錄名官) 도영하(都永夏, 1655-?)는 도사(都事) 송사윤(宋思胤)이 보낸 공문(關文)이라고 칭하면서 소청 뒤에 방(榜)을 걸었다. 그 내용은 국왕이 이미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유생들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었

26) 1717년 8월 5일, 위의 책, 47쪽. “因設疏廳 掌議則星州李世培 尙州金昌欽 公事員則星州裴胤脩 尙州姜碩弼也 午後圈點疏頭 疏頭則尙州黃丈鐘準氏也 余爲儒錢收聚有司 同任則趙叔命老天叟氏也.”

27) 여용빈이 1717년 8월 7일에 이성서, 즉 이인지가 어제 공사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후에는 임원이 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책, 55쪽. “李聖瑞昨日公事員也 余與子邇 昨日曹司而然也.”

28) 1717년 8월 6일, 위의 책, 51쪽. “設疏之後 一種者流暗畜無君之志 反生觀光之意 故以不可入場之義 作榜文 掛於四城門.”

29) 1717년 8월 7일, 위의 책, 53쪽. “無識之輩 外視大論 而或有錄名者 余與李子邇李坦平聊謂公事員姜東載曰 此而不懲 後弊難防 以黜道之罰 掛諸門楣 以警來者云云 則姜曰善 即施之 凡六人也 是後人不敢生意焉.”

30) 1717년 8월 7일, 위의 책, 53쪽. “移設內疏廳於裨將所 外疏廳於蓮堂門外 [...] 數逾累千.”

다.³¹⁾ 도영하는 본래 풍기군수(豊基郡守)였으나 이때 치러지는 식년 감시의 초시 녹명관으로 차출되었다.

유생 대표들이 8월 7일에 내소청에 모여 다음날 상소하기로 결정하고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해 다음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마쳤다. 상소문을 지은 사람은 유천(酉川)의 이상사(李上舍)였고 상소를 베껴 쓴 사람은 여용빈의 종형이었다.³²⁾ 8월 8일에 홍수오(洪壽五)가 상소를 받들고 객사전(客舍殿)으로 나아가 봉안하고 조자수(趙自脩)가 전패(殿牌) 앞에서 상소문을 읽었다.³³⁾

전날 보냈던 통문에 대한 답장이 이날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 먼저 안동향교에서 보낸 답통(答通)이 왔는데³⁴⁾ 경상 좌우도의 유생들이 함께 상경해서 대의를 천하와 후세에 널리 알리자고 했다. 안동 유생의 강한 의지를 밝힌 이 통문은 소청에 모인 유생들을 크게 격려했다.³⁵⁾

한편 경상우도 시관들은 유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8월 8일 저물 무렵에 송사윤이 동상방(東上房)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참시관(參試官) 영해부사(寧海府使) 정우주(鄭宇柱)와 황산찰방(黃山察訪) 이정소(李廷燾)가 들어왔다. 다만 이들은 유생

표2-상소 작성자 명단

임무	성명	거주지
제소(製疏)	이상사	유천
사소(寫疏)	종형	미상
봉소(奉疏)	홍수오	미상
독소(讀疏)	조자수	미상

31) 1717년 8월 7일, 위의 책, 53-54쪽. “錄名官都永夏 稱以都事宋思胤關文 掛榜於疏廳之後 其略曰 儒生所謂國家大舉措者 未知何事 春宮聽政之命 處分大定 則彼儒生者 未知欲以何事陳疏 若以春宮聽政爲不可 則此非臣子之所敢萌於心 而發於口者也 外此則似無急急廢舉陳疏之端云云.”

32) 1717년 8월 7일, 위의 책, 55쪽. “夜會內疏廳 完定明日奉疏之議 [...] 至黎明書盡函成矣 製疏酉川李上舍 寫疏即從兄也.”

33) 1717년 8월 8일, 위의 책, 56쪽. “食後奉疏 奉疏有司即洪壽五也 奉安於客舍殿 牌前讀疏 讀疏即趙叔自脩氏也.”

34) 일기에는 통문을 향교로 보냈다는 기록이 없으나 향교로부터 답통이 온 것을 보면 이전의 어느 시기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35) 1717년 8월 8일, 앞의 책, 56-58쪽. “日暮安東答通來到 辭意激節 頗強人意 文曰 [...] 左右道疏儒 今可相會於闕下 得以明大義於天下後世也 [...] 觀此 人心倍一激厲(勵) 誤引用者註.”

표3-경상우도 시관 명단³⁶⁾

시험관	성명	원래 직책
주시관	송사윤	경상도사
참시관	정우주	영해부사
	이정소	황산찰방
녹명관	도영하	풍기군수

과 마주치는 것을 꺼렸는지 스스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문(水門)을 따라 들어왔다.³⁷⁾ 당시 시관의 명단은 표3과 같다.

시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려 노력했다. 송사윤은 주시관(主試官)으로서 소청에 공문을 보내 식년의 과거시험은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유생들을 설득했다. 소청에서는 상소하는 일을 늦출 수 없다며 도사 등 시관이 상소 대표자 5-6인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요청했다. 송사윤은 동헌에 나가기 전에 다시 유생들에게 시험 볼 것을 설득했으나 유생들이 거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자 강제로 응시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³⁸⁾ 그러나 소청의 유생들이 시소 출입문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자유롭게 시험장에 드나들 수 없을 것을 예상한 녹명관 도영하는 한밤중에 몰래 시관들을 사주해서 시소의 담장에 구멍을 뚫어 새로 출입문을 내었다. 응시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였다.³⁹⁾

드디어 운명의 날인 8월 9일 새벽, 시관인 송사윤, 정우주, 이정소 등이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동문을 열고 시험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시험장으로 들어온 유생이 단 1명도 없었다.⁴⁰⁾

36) 경상좌도의 주시관은 경시관(京試官) 조성복(趙聖復), 참시관이 진주목사 이규년(李奎年)과 김전찰방 이현장(李顯章), 녹명관은 고령현령 전근사(全近思)였으며 시소는 안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66쪽과 91쪽 참조.

37) 1717년 8월 8일, 위의 책, 56쪽. “日晡時 都事宋思胤入來 [···] 思胤入據東上房 蓋爲明日設場計也 參試官寧海府使鄭宇柱 黃山察訪李廷燾 不敢入正門 從水門而步入 非儒生之梗塞也 自家之自處也.”

38) 1717년 8월 8일, 위의 책, 60쪽. “思胤送言于疏廳 諭以大比之科 不可不觀 疏廳答以疏事不可緩 又請見疏儒五六人 進軒前思胤復諭觀光之意 儒生又答以 [···] 廷頸之誠 不可不暴 身外之名 非所暇及云爾 則思胤曰 儒生之志如此 則我何以強之云云矣.”

39) 1717년 8월 8일, 위의 책, 60쪽. “夜一鼓永夏陰喉試官 鑽破牆穴 別設試門 以爲招入一種 無倫之輩.”

40) 1717년 8월 9일, 위의 책, 61쪽. “宋思胤 鄭宇柱 李廷燾 眼同開坐 始啓東門 而日上三竿 無一人冒入者.”

시간이 흐르자 조바심이 난 도영하가 군졸을 불러 모아 강제로 유생을 1명씩 잡아 오도록 하고 성과가 없자 좌수(座首)와 천총(千擲)을 시험장 뜰에 잡아들여 칼을 씌우고 심문했다. 잡혀 온 유생을 심문하여 상소 참여 유생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목에 칼을 씌웠다. 이렇게 무력을 동원해서까지 강제로 시험장에 입장시킨 사람은 겨우 68명에 불과했다. 결국 시관들은 파장(罷場)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⁴¹⁾ 이날 소청에 참여한 유생으로 강제로 체포된 유생은 16명인데 그들의 명단은 표4와 같다.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운집한 수천 명의 유생 중 겨우 60여 명만 식년 감시의 초시에 참여했으니 응시자가 거의 없는 셈이었다. 파장 선언 후 시관들은 초시를 치르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려질까봐 전전공공했다. 그래서 이들은 상소 유생들의 잘못을 날조하여 사람을 일망타진할 계책을 세웠다.⁴²⁾

한편 안동의 경상좌도의 시소에서도 과거시험 거부와 상소를 위한 서명이 진행되었다. 주시관인 경시관 조성복은 유생들의 행동이 조정의

표4-소청 참여자로 강제로 체포된 유생 명단

지역	이름	지역	이름
상주	강석하(姜碩廈)	성주(星州)	이동후(李東后)
	강석범(姜碩範)	고령(高靈)	이석우(李錫祐)
	황성하(黃聖河)	삼가(三嘉)	정상(鄭祥)
	하대익(河大益)		윤종유(尹宗儒)
	홍도전(洪道全)	진주(晉州)	곽우지(郭羽之) ⁴³⁾
	변유갑(卞有甲)	안음(安陰)	오용징(吳龍徵)
	정석범(鄭錫範)	문경(聞慶)	이만필(李晩苾)
성주	도영원(都永遠)	초계(草溪)	장석현(張碩玄)

41) 1717년 8월 9일, 위의 책, 61쪽. “日晚永夏復嗾思胤輩 廣說機防 費盡心力 以爲迫脅儒生之計 [...] 使諸軍卒 各得一儒生 擗入 而不得者 輒施棍罰 如是而尙慮號令之不嚴 則又拿致座首千擲於試院 枷械捧招 [...] 問其科儒 疏儒 其曰科儒者 則舍置之 其曰疏儒者 則械繫之 [...] 自朝至午 招聚入場之數 六十八人 [...] 一道之試 敢不可與零星魍魎輩設場 故書揭罷場二字.”

42) 1717년 8월 9일, 위의 책, 62쪽. “夜見試官報草 則搆捏百端 欲爲網打士林之計 世間意外之變何限 而豈有如是者哉.”

43) 송사윤의 첩정에 의하면, 진주의 곽우지 대신 고령의 김시혁의 종 만복이 포함되기도 한다(위의 책, 78쪽).

처분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해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한다는 절목을 글로 써 붙이고 유생들을 설득했다. 8월 9일 새벽부터 초시를 실시하려 했지만 입장하는 유생이 1명도 없자 그는 유생을 다시 설득했으나 유생들이 과거시험장에 들어오지 않고 상소문을 써서 제출하려 했다. 유생들을 강제로 시험장에 입장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조성복은 그간의 과정을 기록하여 왕세자에게 장달(狀達)로 보고하고 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⁴⁴⁾

경상 좌도와 우도의 유생들이 모두 과거시험을 거부하고 상소했지만 시관들의 대응방법은 이처럼 크게 달랐다. 좌도의 경우에는 조성복이 유생을 설득하다 그들의 뜻이 완강한 것을 알고 파장을 선언한 후 왕세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보고하고 대죄(待罪)를 청했다. 반면에 우도는 도영하가 주도해서 무력을 동원해 유생을 강제로 시험장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상호 충돌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유생에게 전가했다. 여용빈 등을 비롯한 우도의 유생들이 도영하를 크게 비난하고 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상주 향리 이삼억(李三億)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와 관련이 있었다.

시험 당일 저녁에 관찰사는 여용빈과 이인지(李麟至, 字: 聖瑞) 및 이행원(李行遠, 字: 子邇)을 구금하라는 공문을 상주로 보냈다.⁴⁵⁾ 이틀 전에 도영하가 도사에게 잘못 보고한 내용을 도사가 관찰사 권업(權業)에게 그대로 보고한 데다가⁴⁶⁾ 시관들도 그들을 주동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추정된다. 8월 10일 새벽에 소장을 지키던 임무를 교대하고 북문 밖 표종형(表從兄)의 집으로 간 여용빈은 그곳에서 체포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체포되어 욕을 당하느니 잠시 피해서 일의 기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용성(龍城), 이인지는

44) 1717년 8월 10일, 앞의 책, 65-68쪽. “得見趙聖復罷場狀達草 則明快可尙 其草曰 臣以本道丁酉式年監試初試試取事 本月初八日馳到于安東都會 [...] 本道近萬儒生 前期聚會 [...] 設疏於試場門外 無意赴舉是白去乙 臣等或慮遐方士子未詳朝家處分 王世子聽政節目 謄書布木 因謂處分得正 臣民大幸 今無不可赴舉之意 再三往復 縷縷開誘 [...] 初九日曉頭開門招入 則日勢已午 終無一人赴場是白去乙 臣等又以前說申明曉諭是乎矣 儒生等不但終不入場 因爲大會于門外 繕寫疏本 將欲發行是白在果 [...] 有難強迫入場 致令莫重國試 不得開場 不勝惶恐待罪 緣由馳啓云云.”

45) 일기에는 이인지와 이자이를 그들의 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에서는 본명으로 처리했다.

46) 1717년 8월 9일, 앞의 책, 62쪽. “自監營 余及李聖瑞李子邇囚禁關文來到 蓋永夏於七日報於都事 而思胤轉報於權懷也.”

오대(五岱), 이행원은 화개(花開)로 각기 꾀했다.⁴⁷⁾ 그러나 종형이 대신 간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자수하기로 결심했다.⁴⁸⁾ 8월 11일, 날이 밝자 여용빈은 이인지, 이행원과 함께 서둘러 향청(鄉廳)에 가서 자수했다.⁴⁹⁾ 그가 관아에 자수하지 않고 향청에 자수한 것은 당시에 수령이 공석이었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령이 공석 중일 때에는 겸관이 그 업무를 대신 맡아서 수행했는데 당시에는 겸관조차 본 고을로 돌아갔기 때문에⁵⁰⁾ 아관(亞官), 즉 좌수가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관찰사는 사건의 경위와 주모자 등을 왕세자에게 보고하고 국왕에게 장계(狀啓)를 올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문의했다.⁵¹⁾ 왕세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에게 장계를 올린 것은 중대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관찰사는 같은 달 28일경에 다시 국왕에게 장계를 올려 사건 처리에 대해 문의하자 국왕은 이를 형조에 내려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형조에서는 주모자를 모두 수군(水軍)으로 충정(充定)하고 문무과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건의했다.⁵²⁾ 관찰사는 후속조치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사관(査官)을 선산(善山) 부사로 임명했으나 곧바로 사직했으며⁵³⁾, 이어 사관으로 임명된 함창현감조차 얼마 안 되어 사직했다.⁵⁴⁾ 또 그러한 사이 관찰사 자신마저 사직했다.⁵⁵⁾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람은 권업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집(李濬)이었다.

47) 1717년 8월 10일, 위의 책, 65쪽. “朝遞任往北門外表從兄舍館 聞追捕吾三人之奇 吾輩既無所犯 則豈可坐受縲紲之辱乎 且思胤輩方肆戕毒 [...] 臨機應變 亦或一道 則不如小避其鋒以見事機 故余則往龍城 聖瑞往五岱 子邇往花開.”

48) 1717년 8월 10일, 위의 책, 65쪽. “既往龍城 則邑奇茫然 旋切鬱紆 還到官洞 聞從兄代囚之報 心神喪亂 即欲馳入 而夜鼓二鳴 夕火不炊 不得已假寐奴家.”

49) 1717년 8월 11일, 위의 책, 68쪽. “余往鄉廳 見鄉首 遞從兄囚 聖瑞子邇亦自首.”

50) 1717년 8월 11일, 위의 책, 68쪽. “自官洞入來 中路聞 思胤之驢 發至北橋 兼官亦離發矣.”

51) 1717년 9월 12일, 위의 책, 90쪽. “僕也構捏左道科事狀達 而以右道囚禁疏儒科罪事尾其下 自此馳啓 此何事耶.”

52) 1717년 10월 2일, 위의 책, 103쪽. “權著作相一台仲 自官家來傳 刑曹以降定水軍之意稟達云.”; 1717년 10월 3일, 같은 책, 104쪽. “宋叔希天氏 來傳降定水軍 永停文武科之奇 尤切憤惋.”

53) 위의 책, 107쪽, 113쪽, 116-117쪽, 124-125쪽.

54) 위의 책, 130쪽, 132-133쪽.

55) 1717년 11월 25일, 위의 책, 129쪽. “聞方伯上疏 而廢公事云 可怪”; 1717년 12월 16일, 같은 책, 149쪽. “得見權僕辭職疏 對舉湖南伸救吾輩之疏 其構虛捏無之狀 不忍正視.”

그가 부임하기 위해 상주에 들렀을 때, 여용빈 등은 사건의 시말을 자세히 기록한 의송을 제출했다.⁵⁶⁾ 상주의 사림과 문경·함창의 사우 등도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여용빈 등을 빨리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⁵⁷⁾ 또 상주 출신의 전임 관직자들이 이집을 찾아가 인사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집은 “옥사가 해를 넘기고 당초부터 우두머리를 찾아낼 수 없으니, 나처럼 후임자가 어떻게 사건을 분명하게 조사할 수 있겠는가? 형세상 마땅히 먼저 석방하고 후에 보고하겠다”며 석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시간이 이미 삼경이 넘었는데도 검관에게 즉시 석방해서 귀가토록 하라 지시했다.⁵⁸⁾ 조정에서는 후에 과거시험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이들에게 10년간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내렸으나⁵⁹⁾ 이마저도 이듬해 3월 30일에 해제되었다.⁶⁰⁾ 이로서 과거시험 거부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III. 수옥의 실태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717년 8월 11일에 여용빈은 향청으로 가서 지수하고 자신 대신 수감되어 있던 종형과 교대했다. 그러나 뒤늦게 지수한 이인지와 이행원 등은 웬일인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임시로 남문 밖의 김시망(金時望)의 집에 머물도록 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유를 대수자(代囚者), 즉 대신 감옥에 갇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⁶¹⁾ 여용빈은

56) 1718년 4월 30일, 위의 책, 200쪽. “新伯李漵入州 與同患人 聯名呈議送.”

57) 1718년 4월 30일, 위의 책, 201쪽. “本州士林甘文士友 合數百餘人呈文.”; 같은 날, 같은 책, 209쪽. “聞慶咸昌兩邑士友 亦以伸下事呈文.”

58) 1718년 4월 30일, 위의 책, 209쪽. “日夕李海南 洪固城 柳南浦入見方伯 則方伯曰 獄事經年 首倡當初不得覈出 如我後來者 何以明查 勢當先放後達云矣 夜三更方伯分付兼官使之各自主人直放還歸.”

59) 1718년 윤8월 6일, 위의 책, 218쪽. “併限十年停舉事 分付本道何如 康熙五十七年 右副承旨臣金在魯次知達 依準教是置 停舉之意 四館所良中 亦當分付.”

60) 1719년 3월 30일, 위의 책, 223쪽. “閔宗伯鎮厚 請對曰 [...] 上年自本曹仰稟 則尙州試所作擧者 不許解罰 其數十八人 頃日京畿儒生 以違令建院事 亦被停舉之罰 今番則此類何以爲之乎 上曰 一併解停可也.”

61) 1717년 8월 11일, 위의 책, 68쪽. “余往鄉廳 見鄉首 遞代從兄囚 聖瑞子邇亦自首 無代囚者 故得免牢狴 而接于南門外金時望家.”

평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영어(圍圖)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⁶²⁾ 그러나 그는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⁶³⁾ 감옥에 갇힌 다음날 향청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용빈에게 문안했다. 이는 그가 비록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상주를 대표하는 유생이기에 특별히 대우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여용빈은 크게 화를 냈다. 이인지, 이행원과 함께 행동했으나 자기만 쇠장방(鎖匠房)에 가둔 데 대한 항의였다. 향청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지 열쇠를 보내어 뜻대로 하도록 해서 그는 김시망의 집에서 이인지 등과 함께 지냈다.⁶⁴⁾

그러나 상주 출신으로 이때 구속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유독 이들에게 세 사람만 밖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자 향청에서는 이들에게 감옥에 들어가도록 재촉했다.⁶⁵⁾ 이렇게 촉구한 또 다른 이유는 머지않아 검관이 상주에 올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상주목사는 무슨 일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휴가 중이었으며⁶⁶⁾ 그래서 함창현감이 검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⁶⁷⁾ 검관이 오면 고을의 제반 업무를 살펴볼 것인데 이때 죄수들이 모두 감옥에 들어 있어야만 향청의 우두머리인 죄수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여용빈 등이 일으킨 과거시험 거부사건은 당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매우 중대한 정치사회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관은 당연히 이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검관은 봉진(封進)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일을 마치자 다음날 곧바로 임지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는 과거 거부 유생 처리와 같이 중대한 일은 본관이 돌아온 후 다스릴 문제이지 임시로 고을을 맡은 자신이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용빈의 입장에서는 비록 검관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62) 1717년 8월 11일, 위의 책, 68쪽. “行年三十 不知狂狷之爲何所 一朝圓戶忽然重鎖 丈夫困厄 一何至此 只自仰屋長吁.”

63) 1717년 8월 12일, 위의 책, 69쪽. “昨夢所騎放佚 大蛇浮空 朝謂同患日 馬符於吾地支 蛇則赦也 吾當赦矣 一座大笑.”

64) 1717년 8월 12일, 위의 책, 69쪽. “黎明鄉廳送人致問 余頗示愠意 且聖瑞子邇與余 同朝一體 而聖邇則在主人 鄉廳難於取舍 送開鐵而任意爲之云云 出處鎖匠房 比之於重門之內 則不啻霄壤矣.”

65) 1717년 8월 13일, 위의 책, 70쪽. “鄉人之被囚者十人 而獨吾三人在外 故鄉廳難便 而促入之.”

66) 휴가에서 돌아온 것은 1717년 9월 27일이었다. 위의 책, 101쪽 참조.

67) 상주목사의 검관은 함창현감이었다. 『진신안』 외편, 38 참조.

자신들을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겸관이 돌아간 날 쓴 일기에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특별히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며 실망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통해 그러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⁶⁸⁾

여용빈은 겸관이 돌아가자 곧 다시 김시망의 집으로 옮겼는데⁶⁹⁾ 그는 자수한 이후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자주 수감 장소를 바꿨다. 변경된 수감 장소와 그 위치 및 변경 사유를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5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용빈이 자수하던 1717년 8월 11일부터 그가 석방되던 이듬해 4월 30일까지 거의 9개월 동안 무려 20번 이상

표5-여용빈의 수감 장소와 위치 및 변경 사유

일시	수감 장소	위치	사유
1717. 8. 11	쇄장방		종형과 교대, 이인지 등은 김시망 가에 머물
8. 12	김시망 가	남문 밖	향청에 향의, 이인지 등과 함께 생활
8. 13	쇄장방		향청의 재촉, 겸관 환관
8. 18	김시망 가	남문 밖	
9. 11	쇄장방		관찰사 권업 순시
(미상)	(김시망 가)	남문 밖	
9. 28	쇄장방		성주 환관
(미상)	(김시망 가)	남문 밖	
10. 9	쇄장방		옥중인이 보방으로 소란 야기
10. 26	김시망 가	남문 밖	오랜 수감 생활로 간청
10. 27	김시원 가	의국 뒤	천연두
11. 2	조무익 가	서문 안	구들이 차서
11. 24	김세중 가	사창 안	불편
11. 26	김후경 가	사창 안	식사 불편
12. 13	김만일 가	영문가	주인가의 병, 도사 송사윤이 태강으로 입읍 예정
12. 16	쇄장방		도사 송사윤 입읍(여용빈은 전염병으로 주인가에 머물)
12. 19	환가		선고 기일, 성주 입옥 독촉
12. 24	쇄장방		성주 쇄장방에 떨감 부조
(1718. 1. 1)	(미상)	남문 밖	주인가에 홀로 있음
1718. 1. 17	김막남	서문 안	전염병
(4. 30)	(미상)	남문 밖	남문 밖 사람이 주인가에 모임
4. 30	석방		감사가 겸관에게 석방 지시

68) 1717년 8월 15-16일, 앞의 책, 70-71쪽. “十五日 [...] 兼官以封進事來 [...] 十六日 [...] 兼官還去 別無所聞.”

69) 1717년 8월 18일, 위의 책, 72쪽. “與聖瑞子邇 還接於金時望家.”

수감 장소를 옮겼다는 것이다. 『유술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수감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일일이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9개월에 20번 이상 바꾸었다는 사실을 통해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 변경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수감 장소 변경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그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의 명령이나 권유이다. 대부분 주인가에서 머물다가 고을의 수령이 부임하거나 관찰사나 도사가 순시하러 오면 쇠장방, 즉 감옥으로 옮겼다. 그것은 원칙상 미결수는 주인가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권업이 순시하다 이 고을에 도착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는데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⁷⁰⁾

나, 이인지, 이행원이 쇠장방에 살았는데, 성주가 본 고을에 온 후에 감히 주인가에서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⁷¹⁾

이만기(李萬奇)가 와서 말하기를 “송사윤이 머지않아 올 것인데 각자 주인가에 거처하고 있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다. 또 관가에 혹 일이 생기면 더욱 편치 않을 단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성주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차마 말을 박절하게 할 수 없어서 이만기를 통해 그 뜻을 전달해서 우리들이 먼저 스스로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⁷²⁾

관찰사 권업이 순시하다가 상주에 도착하자 수령은 여용빈 등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또 공석 중이던 상주목사가 돌아오자⁷³⁾ 그간 주인가에 머물렀던 여용빈 등은 할 수 없이 쇠장방에 갇히게 되었다. 경상도사 송사윤이 교생고강(校生考講)을 위해 상주목에 올 예정이기 때문에⁷⁴⁾ 목사는 여용빈에게 이만기를 보내어 주인가에서 나와 쇠장방으로 들어가

70) 1717년 9월 11일, 위의 책, 88쪽. “僕也巡到本州 故更不免圍戶之苦 勢不得已也.”

71) 1717년 9월 26일, 위의 책, 101쪽. “余與聖瑞子邇寓鎖匠房 盖以城主到州之後 不敢安坐於主人故也.”

72) 1717년 12월 15일, 위의 책, 149쪽. “李萬奇來言 思胤之來在不遠 各處主人 甚非便且或生事於官家 則尤是不安之端云云 此乃城主之意如此 而不忍其辭之迫切 因李生傳此意 而使吾輩先自善處耳.”

73) 1717년 9월 27일, 위의 책, 101쪽. “城主還官.”

74) 1717년 12월 13일, 위의 책, 147쪽. “思胤以汰講事 不久來到 故城主以同聚城南之意 因鄉人之入見 屢度送言.”

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관리가 상주에 올 때마다 여용빈 등은 주인가에서 나와 감옥으로 옮겼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용빈 등은 비록 관의 명령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주인가에 나와 있어서 말썽이 일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발적으로 쇠장방에 들어가기도 했는데⁷⁵⁾ 이것은 주인가에 거처하는 것이 편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감 장소를 변경한 두 번째 이유는 전염병 때문이었다. 돌림병이 돌면 무조건 거처를 옮겼다. 설령 이거할 곳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만 했다.

김시망의 집은 천연두 환자를 수용하는 곳과 상통했다. 그래서 형편상 부득이하게 의국의 뒤에 있는 김시원의 집으로 옮겼으나 구들이 차고 찬 기운이 도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붓끝으로 다 형용하기 어렵다.⁷⁶⁾

남문 밖 주인가와 가까운 곳에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또한 강능임(姜能任)의 집에 천연두가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서문 안의 김막남의 집으로 옮겼는데, 냉랭한 주인 접대를 처음 당해서 고통스럽다.⁷⁷⁾

1717년 10월 9일에 옥중에 머물던 사람들이 보방(保放)의 문제로 소란을 피우려 여용빈은 할 수 없이 주인가에서 쇠장방으로 옮겨야만 했다.⁷⁸⁾ 그 후 차디찬 쇠장방에서 20일 가까이 유숙하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주인가로 옮겨주기를 간청해 10월 26일에 다시 김시망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천연두 환자 수용소와 통했다.⁷⁹⁾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그 이튿날 위 사료에서 보듯이 김시망의 집에서 김시원의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시원의 집은 구들이 차고 방안에 찬 기운이 돌아 견디기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75) 1717년 12월 16일, 위의 책, 149쪽. “散處主人家已久 不無未安之心 更爲聚會於鎖匠房.”

76) 1717년 10월 28일, 위의 책, 113쪽. “時望家與痘所 不無相通之事 故勢出不已 移接於醫局後金時元家 埃寒涼薄 莫此爲甚 苦悶之狀 難可以筆端盡形容也.”

77) 1718년 1월 17일, 위의 책, 168쪽. “南門外主人家 近地多有痲疫 且姜能任家痘疾猝發 故不得已移接於西門內金莫男家 主人接待之涼薄 見時初也 苦哉.”

78) 1717년 10월 9일, 위의 책, 106쪽. “獄中人 以保放事 卒起鬧端 故余與聖瑞子邇 更寓鎖匠房.”

79) 1717년 10월 26일, 위의 책, 112쪽. “刑鎖久宿冷地 難堪其苦 懇請余等還寓主人 與聖邇 更來金時望家.”

들림병은 대개 날씨가 차가워지면 더 이상 크게 전파하지 않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해의 전염병은 정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당시에 여용빈이 거처하던 주인가는 남문 밖에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자주 전염병이 발생했다. 또 친하게 지내던 강능임의 집이 주인가에서 가까웠는데 그 집에 갑자기 천연두가 발생했다. 그래서 1월 17일에 주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서문 안 김막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주인의 접대가 쌀쌀해서 여용빈의 생활은 이리나 저리나 고달픈 수밖에 없었다.

수감 장소를 옮기는 세 번째 이유는 온돌 때문이었다. 여용빈이 처음 수감될 때에는 4월이라 따뜻했으나 날씨가 차가운 11월이 되자 이들은 추워서 거처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1717년 11월 2일의 일기에는 자수한 이후의 생활을 뒤돌아보며 쓴 회고의 글이 있다.

처음 왔을 때에는 매우 더웠고 사방의 들이 푸르렀다. 그런데 끝내 이슬이 서리가 되고 서리가 눈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초목이 누런 낙엽이 되어 떨어져도 감옥에서 나갈 기약이 없으며 추위에 고통이 배(倍)가 된다. […] 김시원(金時元)의 집은 구들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또한 편하지 않은 형세가 있었다. 그래서 또 서문 안의 조무익(趙武益)의 집으로 옮기니 구들도 매우 따뜻하고 주인도 자못 은근하여 다행이다.⁸⁰⁾

사실 사가를 주인가로 정하여 거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온돌 때문이었다.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사비(私費)를 들여서라도 주인가를 정하여 거처했는데 구들이 차갑다면 구태여 이를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수감 장소를 변경하는 네 번째 이유는 주인가에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설령 제공한다고 해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서 할 수 없이 거처를 옮겨야 하는 때도 있었다. 우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자.

80) 1717년 11월 2일, 위의 책, 116쪽. “初來時溽暑如酒 四野青青 終見露而霜 霜而雪 草木黃落 出場無期 而寒苦倍增 […] 時元家非但埃寒 且有難便之勢 又移於西門內趙武益家 埃也深溫 主人頗慇懃可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인과 그의 아내가 숨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인지와 이행원은 아침을 먹지 못했다. 마침 내가 사내종의 집에서 기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인지는 나의 밥을 나누어 먹었고 이행원은 중형 밥을 나누어 먹었다. 이날의 딱한 사정을 어찌 붓끝으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후에) 향청에서 이들을 불러다 약간의 매를 때렸다.⁸¹⁾

여용빈은 아침에 일어나서 도망친 주인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식비는 물론 체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면화하느라 드나드는 손님들이 주인을 여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⁸²⁾ 그러니 당연히 주인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향청에 불려가 매를 맞았으니 틀어진 그들 사이가 좋아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용빈은 다음날 새벽, 아침을 먹기도 전에 같은 지역의 다른 집으로 옮겼지만 이 집 역시 구들이 차서 견디기 힘들었다.⁸³⁾

주인가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일기에 잘 드러나 있다. 1717년 12월 13일, 여용빈은 여섯 차례나 주인을 바꾼 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인을 여섯 번이나 바꾸었으나 추위의 고통은 가는 곳마다 배나 심했다. 이 집에 온 후로는 노복의 집과 거리가 있어서 (밥을 먹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는 즈음에 반드시 얼고 추운 폐단이 있을 것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 주인가에 음식을 부쳐 먹고 있는데 밥상에 [...] 놓인 몇 줄기 무일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⁸⁴⁾

수감 장소를 옮기는 다섯 번째 이유는 앞의 김시원의 사례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주인가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주인가에

81) 1717년 11월 25일, 위의 책, 129쪽. “朝起視之 則主人并其妻 隱避不現 聖瑞子邇 朝食未炊 余則寄食於奴家 故不得已聖瑞分吾飯 子邇分從兄飯 此日困厄 何可以筆端形諸 鄉廳杖其人略干.”

82) 주인가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주인가는 수감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인가의 조건과 의무는 무엇인지, 또 관이나 향청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등이 모두 연구 대상이나 『유술록』에는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하다.

83) 1717년 11월 26일, 앞의 책, 129쪽. “朝前移接於司倉內金厚京家 埃寒夜永 不堪無聊.”

84) 1717년 12월 13일, 위의 책, 147쪽. “自初至今 凡六遷主 寒苦到處倍新 而來此之後 奴家有間 朝夕往來之際 必有凍寒之弊 故勢出不已 寄食於此主家 盤 [...] 數莖菁葉 令人酸苦.”

사정이 있어서 집을 옮기는 것은 조무익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용빈은 조무익과는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⁸⁵⁾ 그의 집에 어려운 사정이 생기자 할 수 없이 거처를 옮기면서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조무익의 집에 편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다시 사창 안의 김세중 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좋은 주인을 버리고서 쌀쌀하고 야박한 곳으로 또 찾아갔으니 참으로 고통스럽다.⁸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감 장소를 옮긴 이유는 관의 명령이나 권유, 전염병, 난방시설, 식사, 주인가의 사정 등 대체로 다섯 가지였다. 관의 명령이나 권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처하는 곳의 환경이나 사정이 원인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여용빈으로서는 이와 같이 자주 수감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며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주인가를 선정하면 그 주인가에서만 거처해야 했다. 일종의 ‘거주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잠깐의 ‘외출’은 허락되었다. 여용빈 등은 간혀서 해를 넘기게 되자 설날에 간혀 있는 사람들끼리 쇠장방에 모여 단란한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⁸⁷⁾ 또 식산 이만부와 그의 아우 이만기가 내방하여 위로하자 밤에 사례하러 이만부에게 다니오기도 하고 글을 읽으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것은 율타리를 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⁸⁸⁾ 물론 식사를 위해 사내종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유술록』을 살펴보면, 여용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무단 외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만일 감옥에 간혀 있을

85) 조무익은 설날에 여용빈에게 술과 면을 가져오기도 하고(1718년 1월 1일), 여용빈은 석방되던 다음날 조무익의 집에서 동료와 모여 술을 마시며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1718년 5월 1일, 위의 책, 211쪽).

86) 1717년 11월 24일, 앞의 책, 128쪽. “武益家有不便之勢 更移于司倉內金世重家 舍此好主人 又尋涼薄處 良苦良苦.”

87) 1718년 1월 1일, 위의 책, 162쪽. “況聖邇往鎖匠房 而吾則以痘之近 獨在主人家 不得與同患諸益 做得一場團樂 惘惘之懷 尤倍一層 數耶命耶.”

88) 1718년 1월 13일, 위의 책, 167쪽. “北郭李丈與其弟萬奇來訪 蓋接寓於西門內 以其地近故也 夜回謝.”; 1718년 1월 16일, 같은 책, 168쪽. “主人家與北郭李丈寓處 接籬處也 晝夜拜晤 所益不些可幸.”; 1718년 1월 18일, 같은 책, 168쪽. “北郭丈來 講磨益可 既是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비교적 감독이 소홀한 주인가에 거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선고(先考)의 기일(忌日)이 가까워서 법을 어기고 집에 돌아왔다. 비록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까닭이지만, 옛사람들이 대치한 일을 생각하면 도리어 심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바람이 사납고 길이 멀어서 다니는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⁸⁹⁾

주인가를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성주는 형리에게 독촉해서 감옥에 속히 들어가도록 재촉하자 여용빈은 성주의 박절함을 탄식했다.⁹⁰⁾ 그러나 성주의 독촉에도 그는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3-4일 후에 제사를 마친 후 주인가로 귀환했다.⁹¹⁾ 또 이인지도 선고의 기일에 나가는 것을 보면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제삿날의 외출은 묵인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²⁾

그러나 주인가를 선정해 거쳐할 때 무엇보다도 좋은 일은 위로하기 위해 오는 친구나 친척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용빈은 수감 첫날부터 그를 위문하러 오는 자가 밀려들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⁹³⁾, 갇힌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응대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정도였다.⁹⁴⁾ 위문하러 오는 자가 하루에 40-50명 정도였다니⁹⁵⁾ 그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위문객 중에는 자고 가거나 아예 며칠씩 함께 거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⁹⁶⁾

89) 1717년 12월 19일, 위의 책, 155쪽. “先忌在邇 故冒法還庭 雖緣無主祭者 而思古人所處之事 還不勝緘緘之至 風簾路凍 難堪行李之苦.”

90) 1717년 12월 20일, 위의 책, 156쪽. “城主令刑吏督令入獄 其辭迫切 令人起吁.”

91) 그가 언제 귀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2월 22일에 “선고의 기일을 넘기며 추모의 애통함이 천지만큼 크다(過先忌追慕之痛 穹壤奈極)”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이후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92) 1718년 1월 4일, 앞의 책, 164쪽. “李聖瑞 以其親忌之在明出去.”

93) 1717년 8월 11일, 위의 책, 68쪽. “知舊之來問甚多 而忽卒不能記 可欠可欠.”

94) 1717년 8월 13일, 위의 책, 70쪽. “知舊之來問漸多 酬應甚煩.”

95) 1717년 8월 24일, 위의 책, 81쪽. “知舊之來問 日至四五十員 情款誠可感 而酬酢之際 不無惱擾之苦.”

96) 1717년 11월 23일, 위의 책, 128쪽. “乃城妹兄言歸 三宵連枕 猶不盡向來積阻之懷 及至分袖 悵黯倍增 從兄眼疾漸劇 極悶極悶.”; 1717년 12월 17일, 같은 책, 154쪽. “啓初因以聯枕 積月相阻 頗盡積壘.”

내성의 매형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3일 밤을 베개를 나란히 했어도 오히려 이전에 쌓인 회포를 다 풀지 못했는데, 이별에 이르니 슬픔이 배가 된다. 종형의 안질이 점점 심해지니 지극히 고민스럽다.⁹⁷⁾

내성의 매형이 와서 3일 동안 여용빈과 함께 거처하며 이전에 쌓인 회포를 풀었으나 다 풀지 못했는데 떠나간다고 하니 슬픔이 앞을 가렸다. 그러나 여용빈이 감옥이나 쇠장방 또는 향청에 갇혀 있었다면 이와 같이 친척과 여러 날 함께 자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인가에 거처했기 때문에 면회하러 오는 사람과 자유롭게 만나고 또 함께 지낼 수도 있었다. 따라서 형편만 허락한다면 주인가에 거처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람은 정작 내성의 매형이 아니라 종형이었다. 종형은 여용빈을 대신해서 갇혔던 인물이며, 여용빈이 자수하자 곧바로 감옥에서 나와 그의 옥바라지를 해주었다. 종형은 당일 아침에 왔다가 돌아가거나 혹은 며칠 머물렀다 돌아가는 위문객이 아니고 오로지 여용빈을 위해 와서 함께 고생하였다. 그런 그가 안질을 앓고 그 증세가 심해지자 고민이 적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는 여용빈과 같이 옥에 갇히면 그의 가족이나 친척 중의 한 사람이 곁에 머물면서 옥바라지를 해주어야 했다. 여용빈과 함께 옥살이를 하는 유생 중에는 삼가 출신의 윤종유가 있었다. 그가 옥살이를 하자 그의 종형제인 윤종우(尹宗宇)와 윤종형(尹宗衡)이 교대로 와서 옥살이를 돌보았다.

윤종유(字: 師應)의 종형인 윤종우(字: 宗宇)가 종유의 일로 와서 수개월을 머무니 정의(情誼)가 매우 두터웠다. 그 아우 윤종형(字: 平仲)이 (옥바라지를 위해) 대신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니, 허전한 마음을 형용하기 어렵다.⁹⁸⁾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옥바라지가 필요했던 것은 우선 자갈한 심부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옥살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밤낮으

97) 1717년 11월 23일, 위의 책, 128쪽. “乃城妹兄言歸 三宵連枕 猶不盡向來積阻之懷 及至分袖 悵黯倍增 從兄眼疾漸劇 極悶極悶.”

98) 1717년 10월 25일, 위의 책, 111쪽. “尹師應之從兄 宗宇師伯 以師應事 來留數月 情誼甚厚 其弟尹宗衡平仲 代來而歸 悵缺難狀.”

로 이야기할 말벗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곽익지(郭翼之) 어른은 자(字)가 백란(伯鸞)이고 을사년 태생인데 곽우지(郭羽之, 字: 계응)의 만형이었다. 곽우지의 일을 살피기 위해 읍에 머물며 돌아가지 않았는데, 주인가 구들이 차기 때문에 김시망의 집에 와서 유숙했다.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야로 같이 거처하는데, 연세가 우리들보다 높았지만 나이를 잊고 사귀어 정이 깊고 끈끈했다. 말할 때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록 타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쇠장방으로 옮겨 거처한 후로는 낮에는 비록 담소를 했지만, 밤에는 베개를 나란히 할 수 없어서 잘 때에 허전한 생각이 든 것이 서로 마찬가지로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같은 이불을 덮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⁹⁹⁾

여용빈은 이와 같이 옥바라지를 하던 친척들이 돌아갈 때에는 몹시 아쉬움을 나타냈다. 곽익지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1717년 11월 5일이었는데 여용빈은 말벗이 없어지자 매우 허전한 심정을 일기에 남기고 있다.¹⁰⁰⁾ 이와 같은 사례는 『유술록』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옥바라지를 하던 친척이 더욱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소송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감옥 생활을 하던 그들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온갖 옥바라지를 하던 친척에게 소송을 대신 부탁했던 것이다.

종형과 이구지(李龜至, 字: 夏瑞) 및 유성흠(柳聖欽, 字: 時若)이 안동에 갔으니 의송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구지는 이인지의 아우이고 유성흠은 나의 낙동 누이의 사위이다.¹⁰¹⁾

여용빈과 이인지 등은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할 종형과 아우

99) 1717년 10월 26일, 위의 책, 112쪽. “郭丈翼之氏 字伯鸞 乙巳生 而季鷹之伯氏也 爲觀季鷹事 留邑不歸 以其主人之埃冷 來宿時望家 自八月至今 晝夜同處 年歲於我輩爲高年 而契托忘年 情深膠漆 故言語時或有不擇發者 雖非相尤之間 而心甚不安 自移處鎖匠房之後 晝雖談笑 夜不得聯枕 當寢缺然之懷 彼此一般 自今又得同衾 良幸良幸.”

100) 1717년 11월 5일, 위의 책, 117쪽. “郭丈還去 悵黯難裁.”

101) 1717년 8월 23일, 위의 책, 80쪽. “從兄及李龜至夏瑞 柳聖欽時若 往安東 爲呈議送故也 夏瑞卽聖瑞之弟也 時若卽洛東妹婿也.”

또는 조카사위 등을 안동에 보내어 관찰사에게 의송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관찰사가 안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이와 같이 옥바라지를 하던 친척들은 옥에 갇힌 사람의 곁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말벗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관아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IV. 체옥의 원인

여용빈 등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사관의 직무태만과 잦은 사직, 둘째, 관찰사의 직무유기, 셋째, 사회의 분위기 등인데 우선 사관의 조사 지체와 잦은 사직에 대해 살펴보자. 1717년 8월 9일 상주에서 치르기로 되어 있던 감시 초시가 파장하자 관찰사는 곧바로 여용빈, 이인지, 이행원 등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이 주모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그는 왕세자와 왕에게 잇달아 장달과 장계를 올려 사건의 개요와 주모자 등을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부가 내려오지 않자 그는 다시 장계를 올려 주모자를 수군에 충정하고 문무과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관찰사는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고 10월 12일에 사건조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 선산부사를 사관으로 지정하고¹⁰²⁾ 관문(關文)을 보내 형조의 지시 사항과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험 장소에서 유생을 잡아들일 때 애매한 사람이 섞여 들어가 유생들이 원통하다고 하므로 분명히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¹⁰³⁾ 선산부사가

102) 1717년 10월 12일, 위의 책, 107쪽. “查官定於善山倅 而關文來到.”

103) 1717년 10월 28일, 위의 책, 113-115쪽. “得見監營關善山文 盖以善倅爲查官也 關文曰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刑曹關內 [...] 尙州都會作挈儒生段 令本道依事目勘罪之意 回移爲白乎矣 [...] 當依事目勘罪是乎矣 當初自試所捉囚儒生之際 不無曖昧人混入之弊是如 儒生等稱冤亦爲臥乎所 必須明查眞僞後 可以勘斷是乎等以 府使定查官爲去乎 同作挈儒生等 移文捉來 各別查問 某人首倡 某人脅從 某人曖昧是如 明查牒報以爲勘處 俾無玉石俱焚之患事 合行請照驗施行.”

사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공망과 이하서 등은 여용빈 등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선산으로 직접 가서 탄원서를 제출했다.¹⁰⁴⁾ 그러나 선산부사는 이 탄원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임하려고 한다는 의사만 표명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오랫동안 수옥된 사람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여용빈 등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의 태도를 전해 들은 여용빈은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산에 갔던) 이하서가 돌아왔는데 탄원서를 선산의 수령이 보지도 않고 퇴짜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관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핑계를 대며 동문서답을 했다 하니 선산수령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미 사직할 마음이 있다면 빨리 사직하고, 만일 감당할 뜻이 있다면 마땅히 즉시 조사에 착수하면 될 일이지, 사관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겨우 한 번 사직서를 올리고 다시 가타부타 말이 없으며, 올린 탄원서에 대해서도 소행이 이와 같으니 지극히 괴이하다.¹⁰⁵⁾

관찰사는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선산부사가 두 차례나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관을 교체하지 못했다. 이 소식을 선산 사람에게 전해 들은 여용빈은 이와 같이 서로 버티기만 하다가는 겨울을 넘기고 말 것이라 예상했다.¹⁰⁶⁾

관찰사가 사관을 바꾼 것은 11월 27일이나 되어서였다. 그는 이날 사관을 함창현감으로 교체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용빈은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 멀지 않아서 좋겠지만 함창현감도 사직하지 않을까 걱정했다.¹⁰⁷⁾ 여용빈의 우려는 적중했다. 함창수령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만일 유생들을 조사하기 위해 함창으로 데리고 오더라도 감옥에 있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그의 말을 전해 듣고 여용빈은 차가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에 안도했다.¹⁰⁸⁾ 함창수령의 사관 사임은

104) 1717년 10월 30일, 위의 책, 115쪽. “姜公望李夏瑞 爲呈所志往善山.”

105) 1717년 11월 3일, 위의 책, 116-117쪽. “李夏瑞還來 所志則善倅 非但不見而自退 稱以期遞查官 言語問東答西云 善倅之心 未可知矣 既有辭免之心 則從速辭免 如有堪當之意 則當卽行公 而爲查官一月之久 董呈一番辭狀 更無自白 及呈所志 所爲又如是 極怪極怪.”

106) 1717년 11월 10일, 위의 책, 124-125쪽. “因善山人 得聞查官再度辭狀 未得遞改云 如是相持 則過冬可知 極悶極悶.”

107) 1717년 11월 27일, 위의 책, 130쪽. “趙自誠自監營來言 查官移定咸昌云 若然則出場可不遠 而安知咸倅之又不爲辭免耶 是慮.”

108) 1717년 12월 3일, 위의 책, 132-133쪽. “咸昌李雲瑞見訪 因言咸倅以病辭查官 且咸倅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12월 18일에 또 사임하고 말았다. 사관으로 임명된 기간 동안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두 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관의 임무를 마무리했다. 함창현감이 사직한 직접적인 이유는 수찬(修撰) 홍만우(洪萬遇)의 상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¹⁰⁹⁾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찰사가 왕의 지시에 따라 사관을 임명하여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려 했으나 사관으로 임명된 수령들이 시간만 끝다 번번이 사직하고 말았다. 여용빈의 지적처럼 사임할 의향이 있으면 신속히 사임하든지 아니면 사관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의사가 있으면 즉시 조사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사관으로 임명된 선산부사나 함창현감은 모두 미적거리다가 마지못해 사임해서 여용빈 등이 감옥에 갇히는 기간만 연장하고 만 꼴이 되었다.¹¹⁰⁾ 감옥에 갇힌 채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관을 보는 여용빈의 심정은 다음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체옥의 한 원인이 사관의 직무태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가을에 감옥에 들어와 한갓 사관이 핑계를 대고 회피만 해서 지금까지 조사가지연되었기에 모진 추위가 사람을 얼리고 겨울이 장차 다가오는데 만약 이로 인해 늦추어진다면 반드시 해가 지나도록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부가 한때의 곤경으로 인해 분개하는 감회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가정을 오랫동안 보살피지 못하니 근심이 만 가지이며, 또한 집안의 우환에 대한 소식, 기한이 지난 환곡을 납부하라는 독촉의 명령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정신을 사납게 하니, 탄식하고 혀를 잘 만하다.¹¹¹⁾

체옥에 대해 행정적으로 가장 막중한 책임은 관찰사에게 있었다. 권업은 도영하의 보고에 근거해서 여용빈 등을 사건의 주모자로 지적해 체포 수감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았다. 왕에게 두 차례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문의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으며 사관이

言雖移囚咸昌 必不使入囹圄云 若然則雖有移囚之舉 可得免他官寒瘡之苦耶.”

109) 1717년 12월 18일, 위의 책, 154-155쪽. “聞咸倅發怒於洪學士疏 因以辭免查官 期於罷職云 洪疏有何可怒之端 而若是耶 極可怪駭.”

110) 사관으로 임명된 수령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시일만 끝다 사임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111) 1717년 12월 1일, 위의 책, 131쪽. “以秋初入狴中 徒以查官之推托 遷延至今 而瘡寒凍人 玄律將窮 若因此擿捱 則必將爲經年狂狴之蹤 然丈夫不可以一時之困 有所慨懷 而庭省久曠 貽憂萬端 且家間憂患之報 舊選督納之令 又添縹緲中一惱神 可歎 亦可咄也.”

사의를 표명해도 그 이유를 따져 처리하지 않고 일단 사직서를 돌려보내 기만 했다. 여용빈 등이 9개월 동안 수옥 생활을 한 것은 관찰사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는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자신도 사임하고 말았다. 그가 정확히 언제 사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경부터 사직상소를 올리고 공무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조차 있었다.¹¹²⁾ 여용빈이 그의 사직상소를 구해 본 것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1717년 12월 16일이었다. 권업은 이 상소에서 유생들의 체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불법을 저질러) 갇힌 여러 유생은 이미 장계를 올린 가운데 포함시켰으므로 신이 감히 마음대로 석방할 수 없고, 조정에서 오래도록 처분이 없으니 오래 가두어두는 것 또한 매우 엄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계를 올려 여쭙는 것은 형세가 부득이해서였습니다.¹¹³⁾

권업이 사직상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체옥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정에서 바로 처분을 내려주지 않았던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사관들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토록 해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한편 사임한 사관 후임자를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해 결국 조사다운 조사 한번 못 하고 이 사건을 결말짓게 한 것은 누가 뭐래도 권업의 책임이 컸다.

더군다나 권업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처음부터 거의 도영하의 보고에만 근거하고 유생들의 의견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용빈 등은 그에 대한 불신이 컸다. 즉,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책임만 면하려던 도영하의 보고에 근거해서 “시관을 협박해서 쫓아냈다”거나 혹은 “소함을 옮겨두었다”든가 “기왓장과 돌을 어지럽게 던졌다”고 보고문에 기록한 것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왕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후에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⁴⁾

권업의 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전에 남양부사로 양전(量田)

112) 1717년 11월 25일, 위의 책, 129쪽. “聞方伯上疏 而廢公事云 可怪.”

113) 1717년 12월 16일, 위의 책, 152-153쪽. “被囚諸生 既入於狀聞中 則臣不敢任自放釋 而朝家久無處分 滯囚亦甚可慮 故再度狀稟 勢所不已.”

114) 1717년 12월 16일, 위의 책, 153쪽. “身爲一道之表率 則凡事務歸公正 而迫逐試官 移置 疏函 亂投瓦石 [...] 等語 白地攢入於奏御文字 眩蔽四聰四目之明達 [...] 他日斧鉞 何所逃哉.”

사업을 하며 토지를 많이 누락시킨 일이 적발되어 파면되었다.¹¹⁵⁾ 1718년 1월 5일에 여용빈은 권업의 파면 소식을 접하고서 일기에 다음과 같이 그의 심정을 기록했다.

우리들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이로 인해 점차 늦어지겠지만, 다만 결과가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니 통쾌하다.¹¹⁶⁾

더군다나 권업의 행동은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더욱 불신을 받았다. 그는 파면된 후 1718년 4월 24일에 상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여용빈 등에게 미안했던지 갑자기 이들을 보방(保放)했다. 비록 파면되었지만 아직 신임 감사와 교대하기 이전이므로 감사로서 마지막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용빈 등은 권업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옥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권업이 우리 무리를 보방하고 떠나니 그 마음의 소재를 참으로 알지 못하겠다. 그가 보방한 까닭은 우리 무리의 행운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는 마음을 증가시켰다.¹¹⁷⁾

권업이 여용빈 등을 보방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용빈 등은 아무도 보방으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이 새로 부임하는 감사 이집(李濬)에 의해 풀려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의 무능력과 일관성 없는 업무 처리로 여용빈 등은 새 감사가 와서 그들을 석방할 때까지 며칠이라도 더 감옥에 머물러야 했다.

여용빈이 오랫동안 체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 그것도 아주 미묘한 세자대리청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시관과 각 고을의 수령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경상도 여러 지역 유생들의 시각은 차이가 너무 컸다. 물론 시관과 수령 중에는 뜻을 달리하는 사람도

115) 1718년 1월 5일, 위의 책, 164쪽. “聞權慳前爲南陽府使時 多有漏卜 今始發覺 而罷職云.”

116) 1718년 1월 5일, 위의 책, 164쪽. “吾輩之出場 因此漸遲 而第念結梢不出於此漢之手 快哉快哉.”

117) 1718년 4월 25일, 위의 책, 195쪽. “慳也保放吾輩而去 其心所在誠不可曉也 而其所以保放者 非吾輩之幸也 還增憤懣之心也.”

있었겠지만 관찰사 권업을 비롯해서 도사 송사윤, 녹명관 도영하 등은 이 사건을 일부 극렬한 유생이 상소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고의로 방해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경상도의 유생들 대부분은 상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과거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건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유림들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칭찬할 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수찬 홍만우의 상소가 바로 그러한 주장을 담고 있었다. 홍만우는 영남의 유생들이 과거시험을 거부하고 연명상소를 한 것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서 나라를 근심하고 왕실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조정에서 배양한 선비들의 사기를 드러낸 것이기에 오히려 칭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은 유생들을 군졸로 구박하고 도신은 장계를 날조하여 억지로 유생에게 칼을 썬워 가두고 기어이 충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¹¹⁸⁾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사관이 되더라도 관찰사의 지시나 유생의 여론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선산부사나 함창현감이 사관으로 임명된 후 미적거리며 조사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과 거듭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여용빈이 쓴 『유술록』을 중심으로 수옥의 실태와 체육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717년 7월에 숙종은 이이명을 독대한 후 왕세자에게 대리청정 명령을 내렸다. 생원진사시 초시를 보기 위해 상주와 안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경상도의 유생 사이에서 왕을 독대한 이이명을 처벌하고 대리청정의 명령을 거두어들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들은 과거시험장 앞에 소청을 설치하고 연대서명을 받았다. 시험장에 응시자들이 입장하지 않자 시관들은 서명행위를 과거시험 방해행위로 단정하고 군인을 동원해 유생들을 시험장으로 끌고 들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 무력까지 동원했지만 응시유

118) 1717년 12월 11일, 위의 책, 145-146쪽. “不過嶺外遐蹤 驟聞流傳之言 憂愛之誠 自不覺出於秉彝 近萬多士 相率叫囂者 適見聖朝培養士氣 嘉獎宜若無罪 考官以軍卒驅迫道臣以狀啓搆捏 束縛械枉 充軍乃已.”

생이 너무 적어 결국 초시는 파장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시관들은 여용빈 등을 주모자로 지목하여 그들을 체포, 구금했다.

여용빈 등은 자신을 주모자로 지목하자 일단 피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려고 했으나 자신을 대신해 종형을 체포하자 곧바로 동료와 함께 자수하여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감옥은 이들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빨감이 부족해 한겨울에는 난방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히 이들을 주인가에 머물게 했으나 관찰사와 도사가 순시하거나 수령의 점고(點考)가 예상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감옥인 쇠장방에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쇠장방에 머무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단기간이었다.

여용빈 등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관의 직무유기와 잦은 사직과 관련이 깊었다. 선산부사와 함창현감은 사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거듭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관의 임무를 갈무리했다. 또 사관을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해야 하는 관찰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점도 한 원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그릇된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를 중앙정부나 사관에 떠넘겼다. 결국 그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확대해서 여용빈 등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에 관찰사가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당시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누가 사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선산부사와 함창현감이 조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거듭해서 사직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었다. 당시 유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왕실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동안 조정에서 유생들의 사기를 배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나서기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하는데 처벌을 한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관에 임명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참 고 문 헌

『經國大典』, 『肅宗實錄』, 『縉紳案』.

권인호 교열해제, 박찬호 원문정리, 임옥균 번역, 『酉戌錄』. 학고방, 2012.

박병호, 『한국법제사 특수연구』. 한국연구도서관, 1960.

_____,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한국문화연구소, 1972.

_____,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임상혁, 「1583년 김협, 고경기 소송에서 나타나는 법제와 사회상」. 『고문서연구』 43, 2013.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_____, 「'박효량 사건'의 전말과 소송상의 문제점」. 『법사학연구』 31, 2005.

정공식, 「朝鮮 法學史 구상을 위한 試論」. 『서울대학교 법학』 54권 3호, 2013.

국 문 요약

조선시대의 소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소송 절차나 과정 등이 대부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자료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의자를 감옥에 장기간 구금하는 체옥(滯獄)과 소송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체송(滯訟)이다. 최근에 발견된 『유술록』은 개인의 일기로 과거시험 거부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체옥의 기록이었다. 이 일기를 쓴 여용빈은 과거시험을 거부한 주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1717년 8월 11일에 옥에 갇힌 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구속상태였는데 그간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일기에 상세히 기록해서 수옥의 실태와 체옥의 원인 등을 살펴보는 데 매우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이 일기를 근거로 조선시대 과거시험 거부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체옥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717년 7월에 숙종이 이이명을 독대한 후 왕세자에게 대리청정 명령을 내리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모였던 경상도의 유생 사이에서 이이명을 처벌하고 대리청정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시험 당일에 응시자들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과거시험장 앞에 소청을 설치하고 연대서명을 받자 시관들은 서명행위를 과거시험 방해행위로 단정하고 군인을 동원해 유생들을 강제로 시험장에 입장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 무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응시유생이 너무 적어 시험은 파장으로 끝났는데 시관들은 여용빈 등을 주모자로 지목해서 체포, 구금했다.

그러나 당시 감옥은 이들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성안에 주인가(主人家)라는 사가에 머물면서 관찰사와 도사가 순시하거나 수령의 점고(點考)가 예상될 때에만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머무는 기간은 대체로 짧고 대부분 주인가에 머물렀지만 이들은 일종의 구속상태였다. 여용빈 등은 9개월 동안 수감 장소를 무려 20번 이상 바꾸었다.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변경한 셈이다. 이와 같이 자주 변경한 이유는 관의 명령, 전염병, 난방시설(온돌), 식사, 주인가의 사정 등이었다. 체옥의 원인은 사관(査官)의 직무유기와 잦은 사직, 이들을 감독할 관찰사의 무능과 직무유기, 사회의 분위기 등이었다. 이 사건 초기에 관찰사 등이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당시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누가 사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여용빈의 일기인 『유술록』은 체송과 체옥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나 한계가 있다. 여용빈이 상주의 알아주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주인가를 전전하도록 했으며 수옥 기간에 든 비용도 자신이 대지 않고 향교나 서원 및 유림들의 부조로 충당했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의 일반 수옥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연구들이 축적되면 조선 후기 체옥과 체송에 대한 여러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투고일 2013. 12. 20.

심사일 2014. 2. 17.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소송(suit), 체송(滯訟, chesong), 체옥(滯獄, cheok), 주인가(主人家, juinga), 감옥(prison), 과거시험(gwageo examination), 시관(試官, exam supervisor), 응시자(applicants), 상소(sangso or petition)

The Practices of Suok and the Reasons for Che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Viewed from *Yusulrok* by Yeo Yong-bin
Chon, Kyonug-mok

As there have been cumulative studies on suit in the Joseon era, most of the legal proceedings and processes, etc. have been revealed. But, there are some parts of it which have not been fully studied because of scarcity of materials and attention on them. One of the ignored parts is cheok, long-time detention of suspects in prison, and chesong, leaving suit unsettled for a long time. *Yusulrok*, a personal diary of the Joseon era discovered recently, is a record about the author's participation in the campaign to refuse to take the gwageo examination and his cheok related to the punishment for the action. The diary writer Yeo Yong-bin was designated by the authorities as one of those who led the campaign, and put in jail on August 11, 1717. And, he was forced to stay in prison as long as 9 months until April 30 of the next year. As he meticulously wrote in his diary how he had survived in the prison, the diary is evaluated as a very good material to examine the practices of suok and the cause of cheok in the Joseon era.

This paper, based on the diary, introduced the course of the campaign to refuse to take the gwageo examination and examined the practices and causes of cheok. In July 1717, King Sukjong, after his one-one-one meeting with Lee I-myeong, ordered the Crown Prince to serve as his surrogate ruler. Applicants of the examination, especially those from Gyeongsang-do province reached the consensus that Lee I-myeong should be punished, and that the royal order on the surrogate rulership should be cancelled. On the examination day, some of the exam applicants built a makeshift suit table in front of the examination hall, and began to receive the signatures of other applicants for the petition to the king. Then, the exam supervisors decided that the signature gathering was an crime to hinder the gwageo examination, and called the military troop to forcefully enter the applicants to the examination hall. In the process, there were some clashes between the applicants and soldiers. Even if the military forces were summoned, the exam itself was postponed because the number of applicants to take the exam was too small, the exam supervisors pointed out some applicants including Yeo Yong-bin as leaders of the campaign, and arrested and put them in jail.

But, the prisons in those days were not in conditions of being able to keep prisoners for a long time. Therefore, the student prisoners stayed in private houses called junga, and only when the provincial governor or dosa made inspection tours of the prison, or the county chief checked the prison, they were carried back to the prison temporarily. Even if they stayed outside

of the prison for longer time than in prison, they were in principle in detention. They were arranged to move to different private houses as many as 20 times for nine months. On average, they moved more than two times a month for the reasons such as the government's order, infectious disease, heating facilities (ondol), meals, or the condition of the host house, etc. The reasons for cheek were negligence and frequent resignation of sagwan, or investigators, inefficiency and negligence of provincial governor, and social atmosphere, etc. In the early stage of this accident, improper treatment of the governor led to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issue, blocking proper investigation of the prisoners by any investigator who took the position.

Yusulrok, the diary of Yeo Yong-bin, is a good source to study chesong and cheek, but the source had some limits. Since Yeo Yong-bin was from a famous yangban family, or aristocrat, he could not be put in jail, but he was led to stay at various private houses, and the expenses needed to stay at different houses in his suok period were not paid by himself, but by donations from hyanggyo, seowon, or big Confucian families. Such moves were done because he was different in statuses from other prisoners. But, such researches are accumulated, various facts about cheek and suok in the late Joseon period will be revealed.